

#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 제 1283 호 2021. 3. 25.(목)

###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53호[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 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55호[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 2

###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380호[공시송달 공고] ..... 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382호[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383호[2021년도 기본형공익직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 10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388호[2021년도 재난관리실태 공고] ..... 17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393호[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 48

안 내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알림마당 → 북구공보
--------	--

회								
람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53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5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점용·사용허가 연월일 : 2021. 3. 17.
2. 점용·사용의 목적 : 인공구조물 설치(전주 1분)
3. 점용·사용의 장소 : 연암동 159-21번지 일원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가. 면 적
    - 일시 : 18m<sup>2</sup>
    - 영구 : 0.196m<sup>2</sup>
  - 나. 기 간
    - 일시 : 2021. 3. 18. ~ 2021. 3. 19.
    - 영구 : 2021. 3. 20. ~ 2035. 5. 3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한국\*\*공사 동\*\*지사
  - 나. 주 소 : 울산\*\*시 \*구 명\*\*3길 8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55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5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점용·사용허가 연월일 : 2021. 3. 23.
2. 점용·사용의 목적 : 인공구조물 설치(전주 2분)
3. 점용·사용의 장소 : 달천동 892-25번지 일원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가. 면 적
    - 단기 : 18㎡
    - 장기 : 0.393㎡
  - 나. 기 간
    - 단기 : 2021. 3. 29. ~ 2021. 3. 30.
    - 장기 : 2021. 3. 31. ~ 2050. 5. 3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한국\*\*공사 동\*\*지사장
  - 나. 주 소 : 울산\*\*시 \*구 명촌\*\*길 \*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380호

## 공 시 송 달 공 고

하천구역(동천)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경작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하고자 하나,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5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공고내용:**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1. 3. 25. ~ 2021. 4. 8. (14일간)
3. **공고장소:**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무단점유 현황**

재산의 표시		무단점유현황				비 고
소 재 지	번지	행위자	주소	점유내용	점유면적 (㎡)	
복구 시례동	608-1번지	미상	미상	불법경작	170	

### 5. 공시송달내용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경작한 행위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하오니, **2021. 4. 5일까지** **자진 원상복구**하여 주시고, 기한 내 미이행 시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382호

## 울산광역시 복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개정이유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현행 조례와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인원 확대(안 제2조제1항)

- 위원 수를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

나.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구체화(안 제2조제1항제1호)

- 위원 자격요건 중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변경

다. 의회 제출 연차보고서에 주식매각 또는 신탁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8조의2)

3. 관계 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20조의2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주민소통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주민소통담당관

- 전화번호 : 052-241-7144, 팩스번호 : 052-241-7269

###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전문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명”을 “7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명”을 “5명”으로,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3명”을 “5명”으로 한다.

제8조의2 중 “재산등록·선물신고”를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구성) ①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u>5명</u>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1. <u>3명</u>의 위원은 <u>법관</u>,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p> <p>2. (생략)</p> <p>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명한다.</p> <p>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u>3명</u>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p> <p>2. (생략)</p> <p>③ (생략)</p> <p>제8조의2(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구 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 <u>재산등록, 선물신고</u>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조(구성) ① ----- ----- ----- ----- <u>7명</u> ----- ----- ----- -----.</p> <p>1. <u>5명</u>--- <u>판사·검사·변호사</u> ----- ----- -----.</p> <p>2.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u>5명</u> -----.</p> <p>2.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의2(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 ----- --- <u>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u> ----- <u>선물신고</u> ----- ----- -----.</p>



**관계법령**

## □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③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국회 등에 대한 보고)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또는 해당 지방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에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383호

##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에 따라,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4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신청기간 : 2021. 4. 1. ~ 5. 31.(2개월간)

2.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다만, 농업인 편의 제공을 위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신청 가능

3. 적용대상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등”)

나.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

4. 지급요건 :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적용대상 중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가. 지급대상 농지

○ 종전의 쌀고정·밭고정·조건불리직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17~'19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 (쌀고정직불금) 1998.1.1.~2000.12.31.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고정직불금) 2012.1.1.~2014.12.31.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직불금) 2003.1.1.~2005.12.31.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 다만, 농지전용·처분,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농지, 직불금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되지 못하는 농지 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나. 지급대상자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백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실경작)하는 농업인등으로서, 아래 ①~③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 ① '16~'19까지의 기간 중 1회 이상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또는 2020년도 기본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 ②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 ③ 신규신청자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농업법인은 4천5백만원) 이상인 자
- 다만, 주소지가 농촌 외의 지역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법 시행령 제5조)을 충족하는 자 등 직불금 수령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5. 기본직접지불금 유형별 자격요건

가.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접지불금") :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농가 내 1인에게만 지급)

- \* 농가 구성원 : ①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② 주민등록표에 없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sup>1)</sup> 배우자, <sup>2)</sup>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sup>3)</sup>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

자격요건 항목	자격 기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 합	0.1ha 이상 ~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 \*\* 지급대상 농지면적이 0.5ha를 초과하나, ②~⑥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이 120만원보다 적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나. 면적직접지불금 : 지급요건(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소농직접지불금 대상자가 아닌 자

## 6. 지급단가

가. 소농직접지불금 : 농가당 연 120만원

나. 면적직접지불금 : 개별 신청자의 지급대상 농지 면적을 구간별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

(단위 : 만원/ha)

구간 유형 (면적)	1구간	2구간	3구간
	(2ha 이하)	(2ha 초과 ~ 6ha 이하)	(6ha 초과)
논·밭 농업진흥지역	205	197	189
진흥지역 밖의 논	178	170	162
진흥지역 밖의 밭	134	117	100

○ 면적직접지불금 지급상한면적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400ha

\* 다만, 2019년에 종전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면적의 합이 면적직접지불금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

## 7. 신청서 작성 방법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사전에 검증하여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자 요건의 일정 부분을 충족한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관할지(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기본직접지불금 신청서를 배포 예정

\* 2016~2019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2020년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중 지급대상 농지가 0.1ha 이상인 농업인등

- 신청서를 받지 못한 농업인등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를 받은 농업인등은 안내문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되, 기본 직불금 총액의 10% 추가 감액이 없도록 폐경 면적\*은 반드시 신청면적에서 제외하고 기재

\* 폐경면적 : 건축물, 주차장, 콘크리트, 자갈, 모래, 골재채취장, 묘지 등

### 가. 소농직접지불금 신청서 작성 방법

- 소농직접지불금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농직접지불금으로 신청하고, 농가 구성원을 모두 기재한 후 개별 서명

1) 소농직접지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모든 농가 구성원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작성

- ①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가족 구성원은 ④-1에 기재
- ②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없으나(신청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은 세대원 중) 가족관계 증명서에 있는 1) 배우자, 2)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3)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세대원은 ④-2에 기재

④ 가족관계 인적정보 작성표(신청인 기준)		※ "소농"을 선택하실 경우만 해당
④-1 주민등록상 세대원(세대주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④-2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가족구성원 ※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④-1에 기재하지 않은 구성원만 작성합니다.		
		-
		-

- 2) 농지면적 등을 확인 후 신청할 면적을 기재하고, 소농직접지불금 선택
  - 3) 축산업이나 시설재배업을 하는 경우 연간 소득 추정금액을 기재
  - 4) 뒷부분 하단의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에 농가 구성원의 자필 서명
- \*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서명 가능

### 나. 면적직접지불금 신청서 작성 방법

- 소농직접지불금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면적직접지불금 신청
  - 농지면적 등을 확인 후 신청할 면적을 기재하고, 면적직접지불금 선택
  - 신청자 본인의 신청 서명 및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 서명

## 8.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가.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1. <u>등록신청서</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u>( * 행정정보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 서명)</li> </ul>
2.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임차농업인)를 <u>적법한 권원</u> 으로 점유 또는 사용한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차계약이 <b>9.30일 이전에 종료</b>되거나 <b>기본직불 신청인과 농지의 임차인이 다른 경우</b></li> <li>▶ (국공유지) <u>국유재산(유상, 무상) 대부계약서, 매매계약서(납부영수증)</u> * <u>신청인과 대부계약서 당사자와 상이한 경우</u> ▽동일경영체에 속한 세대원, ▽영농 종사를 같이하며, ▽농가 구성원이 농지를 분할한 것이 아닌 경우 인정</li> <li>▶ (사유지) (사인간) <u>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류</u> (소유자가 다수 또는 불명확) 해당 필지에 대한 <u>직전 연도 세금납부내역서(납부영수증) + 경작사실확인서 + 확인서</u></li> <li>▶ (종중토지 등) 소유권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종중토지 등은 신청자에게 경작권을 이양하는 내용으로 합의된 <u>공증된 회의록</u></li> </ul>
3. <u>소농직불신청자</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u>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u></li> </ul>
4. <u>승계대상자</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승계대상자는 우선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u></li> <li>▶ 직전(지급) 연도 기본직불 등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u>가족관계증명서</u></li> <li>▶ 승계 사유 발생 직전 1년 이상 기본직불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u>주민등록등본(사망자 및 본인의 주민등록초본)</u></li> </ul>
5. <u>신규대상자, 관외경작자</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같은 시군구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없는 경우 또는 주소지와 농지소재지의 거리가 30km 이상인 경우</li> <li>▶ 농지 소재지의 이(통)장이 확인·발급한 "<u>경작사실확인서</u>"</li> </ul>
6. <u>금년도 기본직불 등록자 신청농지의 면적합이 직전년도 신청면적합 보다 적은 경우</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u>농지를 분할하여 신청이 확인된 경우 등록거절 또는 부정수급 처리</u></li> <li>▶ 직전 연도 지급대상 농지의 매매계약 등 소유권 이전 증명자료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서 신고필증, 취득등록세 납부 영수증</li> <li>▶ 직전 연도 지급대상 농지의 임대차 종료 : 시스템확인, 임대차계약서</li> <li>▶ 농지전용 등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종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농지전용 관련 자료, 시스템 검증</li> <li>▶ <u>장당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 「농지법」에 따른 장당한 임대차계약서</u></li> </ul>

## 나. 제출방법

-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 생략 가능
- 등록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경작사실확인서 등은 제출 누락이 되지 않도록 접수 전에 미리 준비
- 소농직접지불금 신청자는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접수기간 내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고 접수증 수령
  - \*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가 접수 기간 내에 준비가 되지 않는 경우, 신청접수 기간(2021.4.1.~5.31)에 우선 접수하고 9월 10일 이내에 보완
- 지역 여건에 따라 이장·통장을 통하여 대리접수를 하는 경우, 신청자는 이장·통장을 통하여 관련 서류가 함께 접수될 수 있도록 하고, 접수 이후 접수증을 받아 보관

## 9. 신청시 유의사항

- 기본직접지불금 신청 및 지급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다르게 신청할 수 없으므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변경신고(방문, 전화, 인터넷 등)를 해야 함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읍·면·동사무소의 접수 일정을 확인하여 분산 접수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람. 아울러 방문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진행요원의 지시에 협조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등에 한하고 있으므로, 허위서류 제출시 엄중히 처벌 예정



- \* ① 허위 등록시 3~5년간 등록 제한, ② 허위로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시 전액 환수 및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5~8년간 등록 제한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 사항을 실천해야 함(신청서와 함께 제공되는 필수안내서 등 참조)
- 아울러,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기본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예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공익직불제 콜센터(1644-8778)에 문의하시거나,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http://www.mafra.go.kr))에서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안내사항 : 공익직불제 전용 홈페이지([www.mafra.go.kr/gong](http://www.mafra.go.kr/gong)) 참고

【부록 1】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388호

## 2021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따라, 우리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투자현황(예방·대비·대응·복구사업 등) 및 운영성과 등을 알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로 재난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1년도 재난관리 실태를 공고합니다.

2021. 3. 23.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재난관리 실태 공시 총괄

- ◆ 2020년도에는 재난이 2회 발생하여 사유시설 211건의 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120,100,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 재난 유형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1회, 태풍피해가 2회였으며, 재해복구는 완료되었습니다.
  - 가장 큰 피해를 입힌 재난은 “제9·10호 태풍 마이삭, 하이선”이며 110,400천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예방실적으로는
  - 재난에 대응할 조직은 6개 부서 133명으로 지난해 보다 6명 증가하였습니다.
  -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는 총 8종으로, 자동강우량기 4대, 자동우량경보시설 4대, 지진해일 예경보 시설 8대, 재해문자전광판 5대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5년 평균보다 2개소 증가하였습니다.

- 방재담당 공무원의 재난안전관련 분야 교육은 7개 교육과정, 30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 및 캠페인은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교육 50회, 1,193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적립은 당해연도 법정 확보 기준액인 672백만원과 같은 672백만원을 적립하여 100% 확보되었습니다.
  - 위 적립액은 최근 5년 평균 582백만원보다 90백만원 증가하였고, 지난해보다 49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확보된 재난관리기금은 1,875백만원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작년사용액 317백만원에 비해 1,558백만원 늘어난 수치이며, 5년 평균 721백만원에 비하여 1,154백만원 더 사용했습니다.
- ◆ 「자연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A등급으로 안전에 가까우며, 지난해는 행정안전부에서 개선을 추진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 ◆ 그 밖에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은 공공시설물 42개소 중 39개소(92.8%), 도로시설물 63개소 중 58개소(92%), 어항시설 11개소 중 11개소(100%)가 내진성능 확보 또는 내진보강 완료되어 93.1% 내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 이러한 재해발생 가능성, 재해저감을 위한 행정적 노력, 구조적인 재해 대응능력 등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2020년도 우리 구의 재난관리역량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 재난관리 실태 세부 공시

### 1)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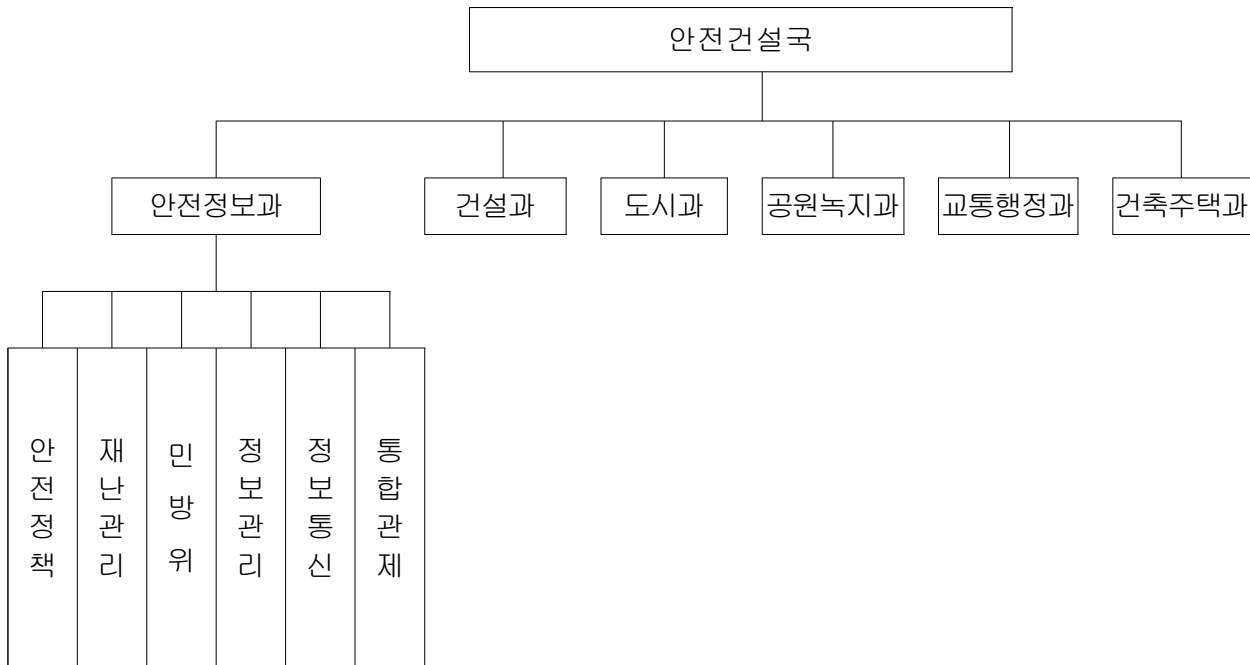
일시	재난(피해) 원인	피해내용	복구내용	추진사항
7.23.~ 7.24.	7.23. 호우	-공공시설 52건 (도로 12, 건물 3, 사면 5, 하천 18, 농작물 20, 기타 6) -사유시설 22건 (건물 2, 농작물 20)	복구완료 (재난지원금 9,700천원 지급)	56명 비상근무
9.2~ 9.7	제9·10호 태풍 마이삭, 하이선	-공공시설 481건 (도로 177, 건물 52, 하천 2, 해양시설 16, 가로수 149, 기타 85) -사유시설 189건 (건물 3, 농작물 186)	복구완료 (재난지원금 110,400천원 지급)	전직원 1/2 비상근무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조치실적

#### ①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가. 기구

(2020. 12. 31. 기준)



나. 정원(안전건설국)

(2020. 12. 3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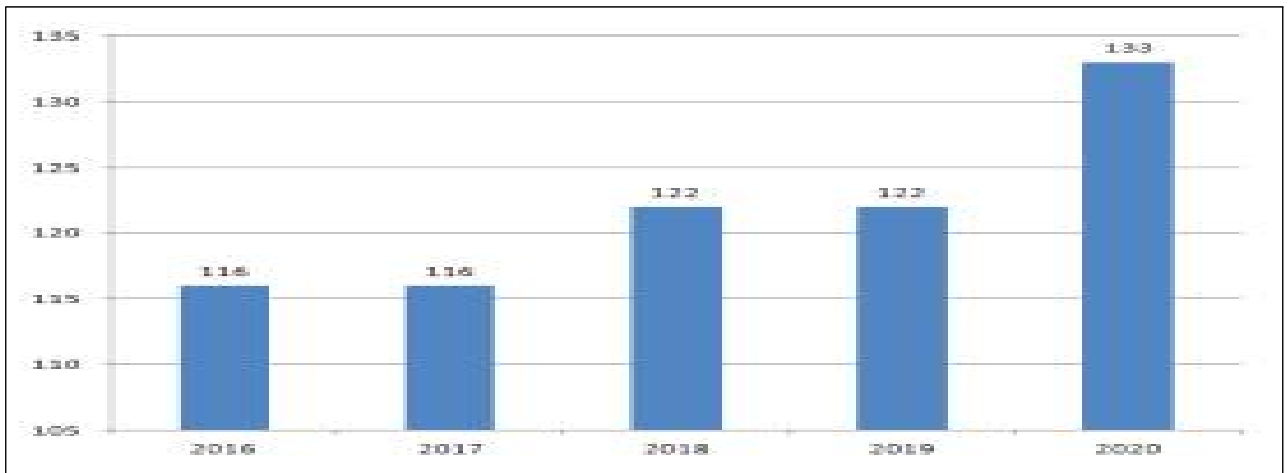
과 별	계	일 반 직								기타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원	130	130	1	6	29	46	35	13	
	현원	133	133	1	6	31	48	24	23	
안 전 정보과	정원	30	30	1	1	6	11	8	3	
	현원	30	30	1	1	6	11	6	5	
건설과	정원	25	25		1	6	7	7	4	
	현원	25	25		1	6	6	6	6	
도시과	정원	19	19		1	5	6	6	1	
	현원	19	19		1	5	7	5	1	
공 원	정원	18	18		1	4	7	3	3	
	현원	18	18		1	4	7	3	3	
교 통	정원	16	16		1	3	7	4	1	
	현원	17	17		1	4	7	1	4	
건 축 주택과	정원	22	22		1	5	8	7	1	
	현원	24	24		1	6	10	3	4	

다. 방재안전직 정·현원 현황

과 별	계	일 반 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원	2	2				1	1	
	현원	1	1					1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일반직 현원 * 방재안전직 포함	116	116	122	122	133
방재안전직 현원	1	1	1	1	1



☞ 재난 담당 기구 지속적 보강 실시

지하안전관리 및 방재안전 업무 강화를 위한 직렬 조정(2020. 7. 1.)

※ 시설7급 → 시설·방재안전7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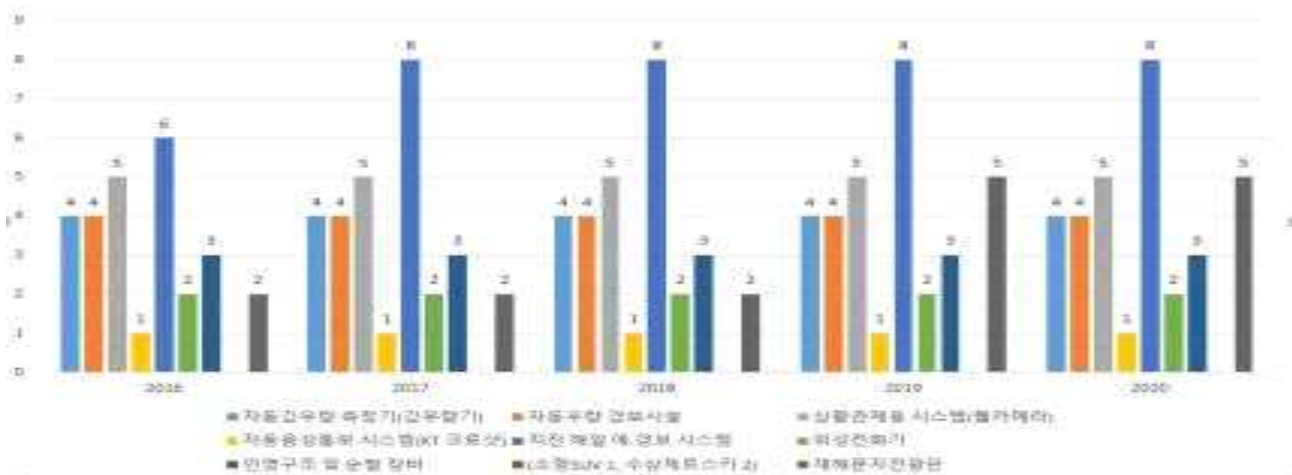
## ②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 가. 현황

구 분	개소	설치장소
자동강우량 측정기(강우량기)	4	문화예술회관 외 3개소
자동우량 경보시설	4	북구청 외 3개소
상황관제용 시스템(웹카메라)	5	효문배수장 외 4개소
자동음성통보 시스템(KT 크로샷)	1	시스템
지진 해일 예·경보 시스템	8	정자항 외 7개소
위성전화기	2	안전정보과 내
인명구조 및 순찰 장비 (투싼 1, 수상제트스키 2)	3	소형 SUV : 북구청 수상제트스키 : 의용소방대 수난구조대 위탁
재해문자전광판	5	중산동, 연암동, 매곡동, 양정동, 명촌동

###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자동강우량 측정기(강우량기)	4	4	4	4	4
자동우량 경보시설	4	4	4	4	4
상황관제용 시스템(웹카메라)	5	5	5	5	5
자동음성통보 시스템(KT 크로샷)	1	1	1	1	1
지진 해일 예·경보 시스템	6	8	8	8	8
위성전화기	2	2	2	2	2
인명구조 및 순찰 장비 (소형SUV 1, 수상제트스키 2)	3	3	3	3	3
재해문자전광판	2	2	2	5	5
합 계	27	29	29	32	32



☞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 변경사항 없음

### ③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에방에 관한 홍보

#### 가. 재난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 현황

[방재담당공무원의 전문성(재난안전관련 분야)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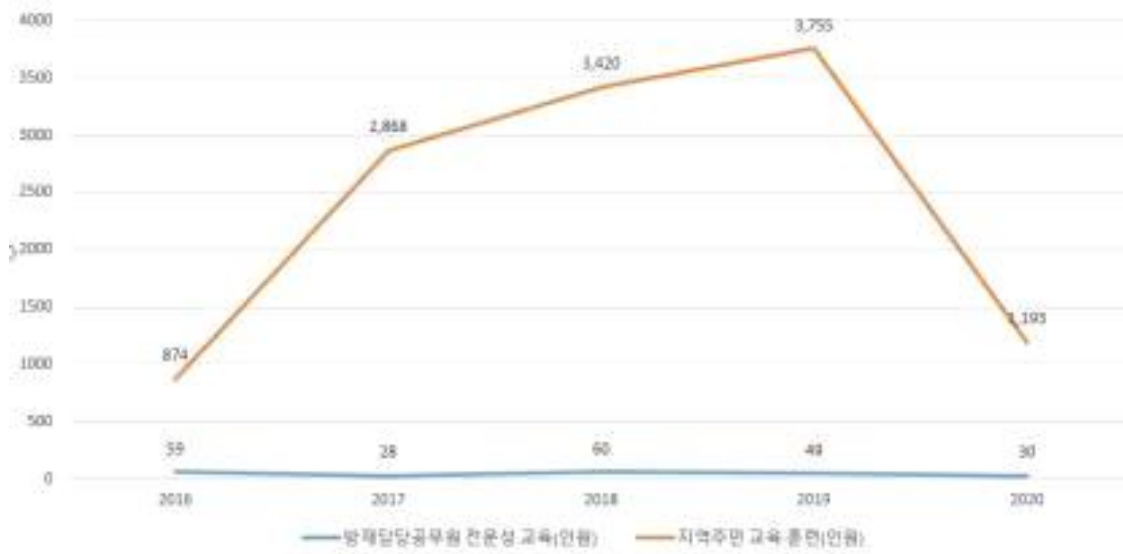
과정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참석인원	비고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교육(1기)	2.12. ~ 2.14.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명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실무자 과정(6월)	6.23. ~ 6.24.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1명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관리자 과정(10월)	10.22.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4명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실무자 과정(10월)	10.22. ~ 10.23.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11명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실무자 과정(11월)	11.24. ~ 11.25.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6명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사이버교육과정	3 ~ 6월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6명	행안부 재난대응과훈련과-668(2020.3.10.) 사이버교육 대체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사이버교육과정	11 ~ 12월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	1명	행안부 재난대응과훈련과-3077(2020.11.26.) 사이버교육 대체
소 계			30명	

#### [재난관리에방을 위한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훈련]

교육/훈련명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용	주관	비고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교육	10월~12월	어린이집,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	1,193명	재난대응요령	북구청	50회

####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방재담당공무원 전문성 교육(인원)	59명	28명	60명	49명	30명
지역주민 교육·훈련(인원)	874명	2,868명	3,420명	3,755명	1,193명



☞ 코로나19로 인하여 재난발생에 대한 교육·훈련 축소



### ④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 가.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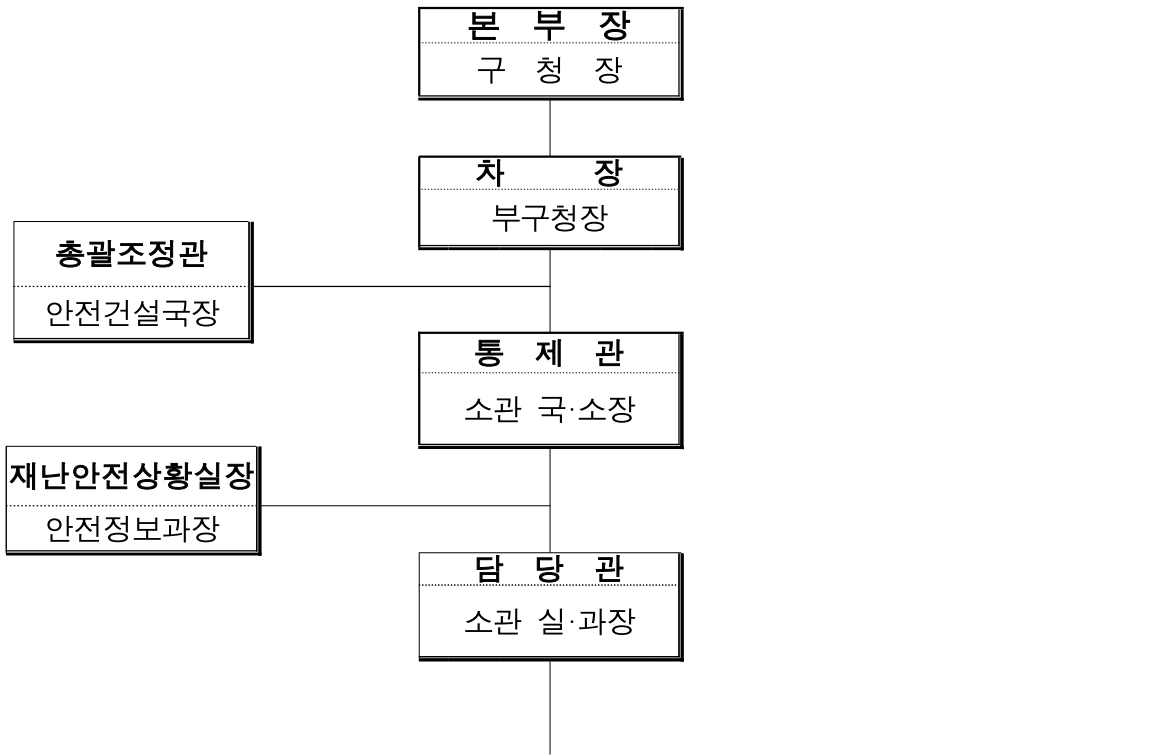
##### (가) 기본적인 안전관리체계

[안전관리기구의 기능]

구 분	근 거	구 성	기 능
안전관리위원회 (지역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 구청장</li> <li>• 위원: 18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지역에서의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li> <li>• 해당 지역에서의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li> <li>•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li> <li>•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li> <li>•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li> </ul>
안전관리실무 위원회	같은 법 제11조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 부구청장</li> <li>• 위원: 16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에 부칠 의안을 검토</li> <li>•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정리</li> </ul>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	같은 법 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본부장 : 구청장</li> <li>• 통합지원본부장 : 부구청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li> <li>•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li> <li>•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li> <li>•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li> <li>•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ul>
통합지원본부			
재난 안전상황실 설치·운영	같은 법 제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li> </ul>
안전관리자문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li> <li>•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li> <li>•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li> </ul>
재난상황의 보고	같은 법 제2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재난 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내용 보고</li> <li>•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안전행정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li> </ul>
재난 신고	같은 법 제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li> <li>• 시장·군수·구청장, 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li> </ul>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조직



상황 관리 총괄	긴급 생활 안정 지원	재난 현장 환경 정비	긴급 통신 지원	시 설 응급복구	에 너 지 기능복구	재난 수습 홍보	물자 관리 및 자원 지원	교통 대책	의료 · 방역	자원 봉사 관리	사회 질서 유지	수색 구조 · 구급
안전정보과	복지 지원과	환경 미화과	안전 정보과	건설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농수산과 문화체육과	경제 일자리 담당관	기획 예산담 당관	안전 정보과	교통 행정과	보건소	복지 지원과	안전 정보과	안전 정보과
총무과	대한 적십자사		KT 울산 지사	북구 자율방재단	한국전기 안전공사 한전울산 지사 가스안전 공사		울산강북 교육지원청  육군 7765부대 2대대  북부 경찰서	북부 경찰서		자원 봉사 센터	북부 경찰서	북부 소방서

## □ 재난관리기능의 임무 및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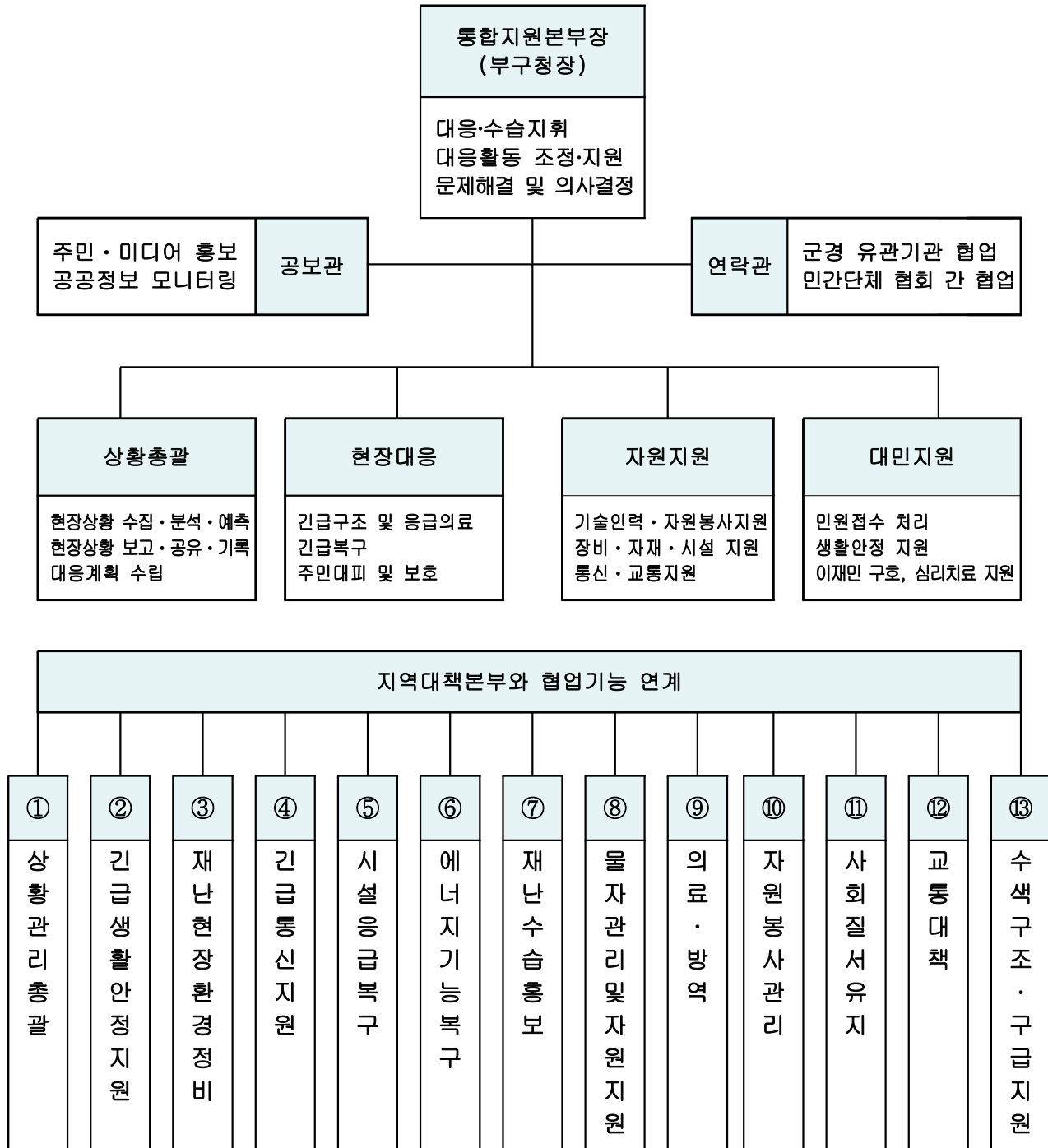
- 상황관리 총괄 : 재난총괄담당 업무 수행(안전정보과)
  - \* 타 기능에 대한 상황관리 총괄 및 상호협력을 위한 지원 사항 등 파악
- 긴급생활 안정지원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및 이재민 구호 등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복지지원과)
  - \* 인명피해(사망·부상·실종), 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제외
- 재난현장 환경정비 : 유해화학물질, 쓰레기 등 수거·처리 지원(환경미화과)
  - \* 환경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환경정비 지원
- 긴급 통신지원 : 통신두절지역 통신시설 인프라 복구(안전정보과)
  - \* 통신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통신 지원
- 시설 응급복구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지원(안전정보과)
  - \* 공공·사유시설(환경·통신·에너지·교통시설 제외) 피해현황 및 응급복구 상황 총괄
- 에너지 기능복구 : 가스·전기·유류 등 국민생활 밀착형 피해시설기능 회복 지원(경제일자리담당관)
  - \* 에너지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에너지 지원
- 재난수습 홍보 : 재난대처·수습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배포·조정(기획예산담당관)
  - \* 타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이슈 등 언론사항 총괄관리 및 지원
-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 국가 재난물자계획 관리 지원 및 적정상태 유지(안전정보과)
  - \* 타 기능에 대한 물자·자원(장비·자재·시설) 지원 총괄관리
- 교통대책 : 육상(육로, 항공), 해상 교통수단 지원(교통행정과)
  - \* 교통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수송 지원
- 의료·방역 : 재난지역 공중보건서비스 지원(보건소)
  - \* 의료·방역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의료 지원
- 자원봉사 관리 : 재난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복지지원과)
  - \* 타 기능에 대한 인력(민·관·군) 지원 총괄관리
- 사회질서 유지 : 재난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안전정보과)
  - \* 교통, 범죄, 현장통제, 안전관리, 주민보호(대피 등) 등 경찰총괄관리
- 수색·구조·구급 : 재난지역 구조·구급 지원(안전정보과)
  - \*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및 사망·실종자 수색 등 소방총괄관리

(나) 주요재난별 안전관리체계

[풍수해 현장행동 매뉴얼]

○ 복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운영

【조직도】



## ○ 유관기관 주요 역할·임무

기관·부서	임무와 역할
안전정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및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li> <li>- 구조·구급을 제외한 재난수습 및 복구 활동 총괄 지휘</li> <li>- 상급기관 상황보고 및 유관기관 전파</li> </ul>
주민소통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여론 수집 및 민심동향, 민원사항 처리</li> <li>- 직원 비상소집 및 복무관리, 합동분향소 설치</li> </ul>
기획예산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보지원반 구성·운영 / 재난대응 공보 전담팀 가동</li> <li>- 각종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지원</li> </ul>
환경미화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명구조 및 붕괴 잔해물 철거작업 일정에 따라 발생된 폐기물 수거처리</li> </ul>
교통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현장 인근에 주차된 차량 소유주에게 연락 이동 조치</li> <li>-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차량 임시보관소 설치 견인 및 관리</li> </ul>
복구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급의료소 설치·운영</li> <li>- 사상자 조치(환자분류 → 응급처치 → 후송치료)</li> </ul>
북부소방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구조통제단 구성·운영</li> <li>- 긴급구조관련기간의 긴급구조활동 통합·조정</li> </ul>
북부경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통제, 우회도로 확보 등 교통대책</li> <li>- 사상자 신원확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확보 등 초동수사</li> </ul>
육군 7765부대 2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명구조 활동 지원(인력, 장비)</li> </ul>
한국전기안전공사 울산지역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붕괴로 인한 전기설비의 안정성 확보 및 복구</li> </ul>
한국전력공사 울산부지역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력 설비 복구 인력 및 장비 현장투입 복구 시행</li> </ul>
KT울산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신 시설 복구 인력 및 장비 현장투입 복구 시행</li> </ul>
울산복구자원봉사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안전 긴급자원봉사단 구성(모집)·운영</li> <li>- 통합지휘소 현장지휘관 지휘 하에 분야별 자원봉사자 배치 및 활동관리</li> </ul>
대한적십자사 희망나눔센터 울산지역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피해자 긴급구호 봉사활동</li> <li>- 긴급구조간 지원활동</li> <li>-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안전 지원활동 전개</li> <li>- 심리안정지원 관련 네트워크 구축·운영</li> </ul>

## 나.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건명(규정명칭)	주요내용	제정일자	비고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05.11.14.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 자연 및 인적재난에 대비한 울산 북구 재난 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05.11.14.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 울산 북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규정	2004.12.13.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 울산북구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2005.03.21.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재해유발요인을 예측·분석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06.05.22.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조례	▪ 지역자율방재단 임원구성 및 활동지원, 교육, 훈련 등 방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07.07.16.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	▪ 지진발생 지역 내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12.03.05.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자연재해지구에서의 행위제한	2014.04.25.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	▪ 재난현장지휘 통합대응 체계	2014.04.25.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 평가에 관한 조례	▪ 재해원인 조사 분석 평가	2014.04.2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2016.12.15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2017.09.28.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17.12.14.	
안전도시 조례	▪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18.12.27	
생활안전보험 운영조례	▪ 생활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19.09.11.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2019.09.11.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2020.12.24.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시설 유형	시설명	시설 현황	관리 주체	지정 일자	조치한 사항	비고
교통 수송	울산공항	여객터미널 : 8,886㎡ 활주로 : 2,000 X45m 계류장 : 33,605㎡ 주차장 : 26,860㎡ 항행안전시설 : CAT-I	한국공항 공사 울산지사	1984.07.05. (대통령령 제1460호)	-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사업명	위치	사업내용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정비목적
명촌배수장 제진기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명촌동 433-24	제진기 안전장치 설치 PLC 프로그램 교체	'20. 3. 17. ~ '20. 4. 9.	9	배수장 정비
명촌배수장 정밀안전점검 용역	명촌동 433-24	명촌배수장 정밀안전점검 1식	'20. 11. 11. ~ '20. 12. 10.	8	
효문배수장 옥상방수 공사	효문동 431-8	배수장 옥상 방수	'20. 5. 19. ~ '20. 6. 15.	20	
효문배수장 정밀안전점검 용역	효문동 431-8	효문배수장 정밀안전 점검 1식	'20. 8. 19. ~ '20. 9. 17.	8	
2020년 동천시설물 응급복구공사 단가계약	북구 관내	응급복구 1식	'20. 8. 5. ~ '20. 12. 6.	30	하천정비
동천(상안교 하부) 제방복구공사	호계동 943-2번지	석축쌓기 1식	'20. 12. 11. ~ '20. 12. 24.	19	
어물천 외 1개소 긴급복구공사	어물동 1240-94번지	제방정비	'20. 10. 7. ~ '20. 11. 4.	20	
대안천 외 1개소 긴급복구공사	대안동 67번지	제방정비	'20. 10. 27. ~ '20. 11. 10.	14	
신현동 977번지 일원 도로복구 석축공사	신현동 977번지	석축공사	'20. 10. 13. ~ '20. 10. 30.	17	도로복구
시특법 대상시설물(시례 잠수교 외 2개소)보수보강 공사	북구 관내 시특법 대상시설물	보수보강	'20. 5. 18. ~ '20. 6. 16.	103	시특법 대상시설물 점검
시특법 대상시설물(천곡 교 외 5개소) 보수보강공사	북구 관내 시특법 대상시설물	보수보강	'20. 6. 17. ~ '20. 7. 16.	71	
구국도31호선 낙석방지책 보수공사	연암동 산77-2번지	낙석방지울타리 보수 및 신설	'20. 5. 19. ~ '20. 6. 15.	16	급경사지 점검

구도1호선 및 구국도 31호선 급경사지 보수보강공사	중산동 산 151-1번지 외 1개소	급경사지 보수보강	'20. 3. 4. ~ '20. 6. 9.	378	
2020년 산림유역관리사업 (중산동 190-5번지 일원)	중산동 190-5번지 일원	바닥막이 11개소, 큰돌바닥갈기 396㎡, 큰돌호형돌수로 46m	'20. 03. 13 ~ '20. 06. 22	345	사방사업
2020년 산림유역관리사업 (중산동 산147번지 일원)	중산동 산147번지 일원	골막이 1개소, 바닥막이 4개소, 큰돌바닥갈기 330㎡	'20. 03. 13 ~ '20. 06. 22	251	
2020년 산림유역관리사업 (중산동 산150번지 일원)	중산동 산150번지 일원	사방댐1개소, 큰돌바닥갈기 294㎡, 바닥막이 4개소	'20. 03. 13 ~ '20. 06. 22	290	
2020년 산림유역관리사업 (호계동 산30-4번지 일원)	호계동 산30-4지 일원	사방댐1개소, 골막이1개소, 바닥막이 1개소	'20. 03. 13 ~ '20. 06. 23	282	
2020년 산림유역관리사업 (호계동 산44번지 일원)	호계동 산44지 일원	골막이 2개소, 바닥막이 12개소, 콘크리트 통행로 2개소	'20. 03. 13 ~ '20. 06. 24	396	
2020년 산림유역관리사업 (호계동 산35번지 일원)	호계동 산35지 일원	골막이 1개소, 바닥막이5개소, 콘크리트 통행로 1개소	'20. 03. 13 ~ '20. 06. 24	266	
2020년 사방댐 설치 및 산사태 예방사업(매곡3 일반산업단지 일원)	매곡동 산 178번지 일원	사방댐 1개소, 마닥막이 11개소, 큰돌찰쌓기 750㎡	'20. 04. 27 ~ '20. 06. 22	294	
2020년 계류보전 및 산사태예방사업(수동마을 일원)	호계동 산 60번지	바닥막이9개소, 큰돌찰쌓기 990㎡	'20. 05. 07 ~ '20. 06. 25	287	
2020년 계류보전 및 산사태예방사업(정자저수지 일원)	신현동 산 189번지 일원	골막이 1개소, 큰돌찰쌓기 702㎡	'20. 05. 20 ~ '20. 06. 29	240	
2020년 산림유역관리사업(부대 시설 부문)	중산동 산147번지 일원 등 2개소	휴게정자 1개소, 홍교데크 1개소, 목재교량 3개소, 화목류 식재 180본	'20. 06. 15~ '20. 08. 03	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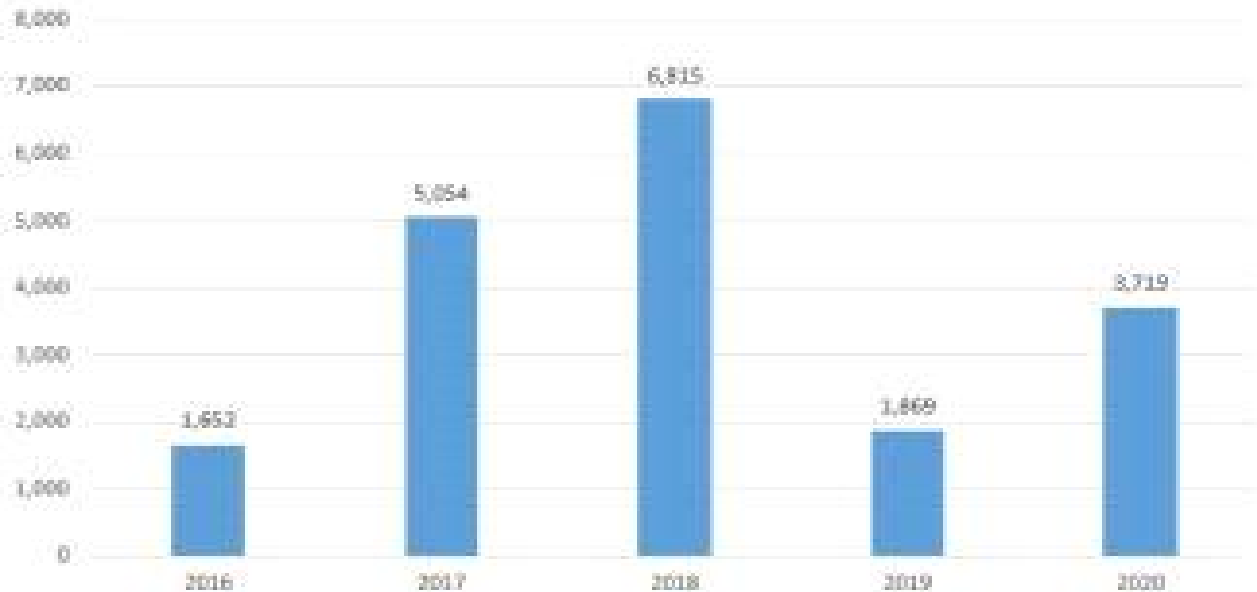


		등			
2020년 하반기 사방사업(영포지구)	영포동 산134 일원 등 2개소	괘잡석골막이 1개소 괘잡석바닥깔기 10㎡ 등	'20. 8. 25. ~ '20. 10. 16.	18	
2020년 하반기 2차 사방사업 (산하지구 외 1 개소)	산하동 산151 일원 등 2개소	코어네트 447㎡ 게비온설치 90㎡ 등	'20. 12. 15. ~ '20. 12. 28.	85	
합 계				3,719	

◆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재난방지시설 예산확보	1,652	5,054	6,815	1,869	3,719



- ☞ 관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실시에 따른 보수·보강공사가 2017, 2018년에 집중 실시되어 일시적 소요예산 증가.
- ☞ 2020년 사방사업실시로 소요예산 증가.

⑦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  
 축과 장비·시설 및 인력의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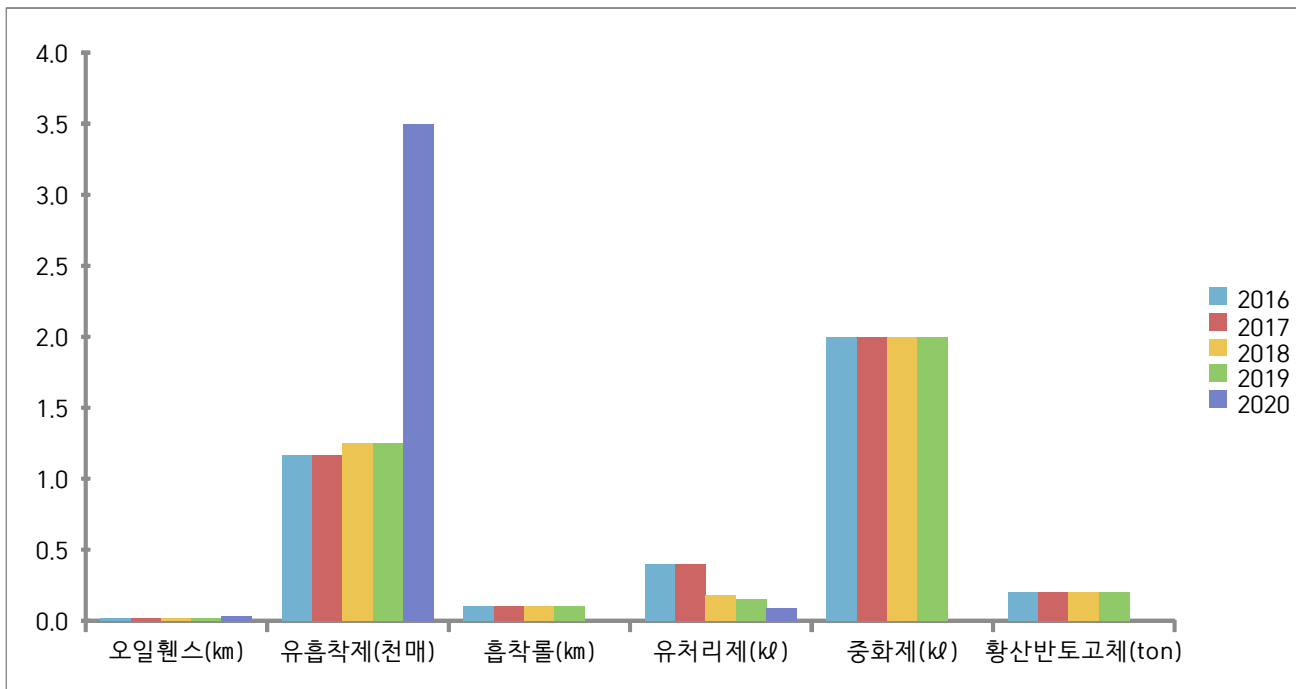
가.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방재물자]

구분	오일웬스	유흡착제	흡착롤	유처리제	중화제	황산반토 고체
	km	천매	km	kl	kl	ton
총계	0.035	3.5	0	0.09	0	0

◆ 방재물자 연도별 비교

방재물자 종류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오일웬스(km)	0.02	0.02	0.018	0.018	0.035
유흡착제(천매)	1.17	1.17	1.25	1.25	3.5
흡착롤(km)	0.1	0.1	0.1	0.1	0
유처리제(kl)	0.4	0.4	0.18	0.15	0.09
중화제(kl)	2	2	2	2	0
황산반토고체(ton)	0.2	0.2	0.2	0.2	0



☞ 방제장비의 노후화 및 소모성 재료로 증감요인 발생

[의료시설]

구 분	개소	의사	간호사	구급차	병상수	영안실
병 원	12	84	355	3	1,561	2
보건소	1	2	36	1	-	-
기 타	0	-	-	-	-	-
합 계	13	86	391	4	1,561	2

[수용시설]

구분	합 계		학 교		마을회관		경로당		관공서		기 타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총계	54	14,403	33	11,304	-	-	8	323	13	2,776	-	-

◆ 의료시설 및 수용시설 연도별 비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의료시설		9	10	10	12	13
수용시설	개소	37	37	36	36	54
	수용인원	9,115	9,222	11,092	11,092	14,403



- ☞ 2020. 3월 임시주거시설 18개소 신규지정(학교 12, 공공기관 6)
- ☞ 요양병원 1개소 증가

나. 장비 지정

[구조장비]

구분	계	사다리차	구명환	에어백	산소호흡기	구조용로프	구명보트	구명동의	기타
총계	108	0	25	4	26	8	2	4	39

[복구장비]

구분	계	크레인 등	굴삭기	분무기 등	덤프	견인차	청소차	기타
총계	72	1	0	3	3	0	26	39

[산불진화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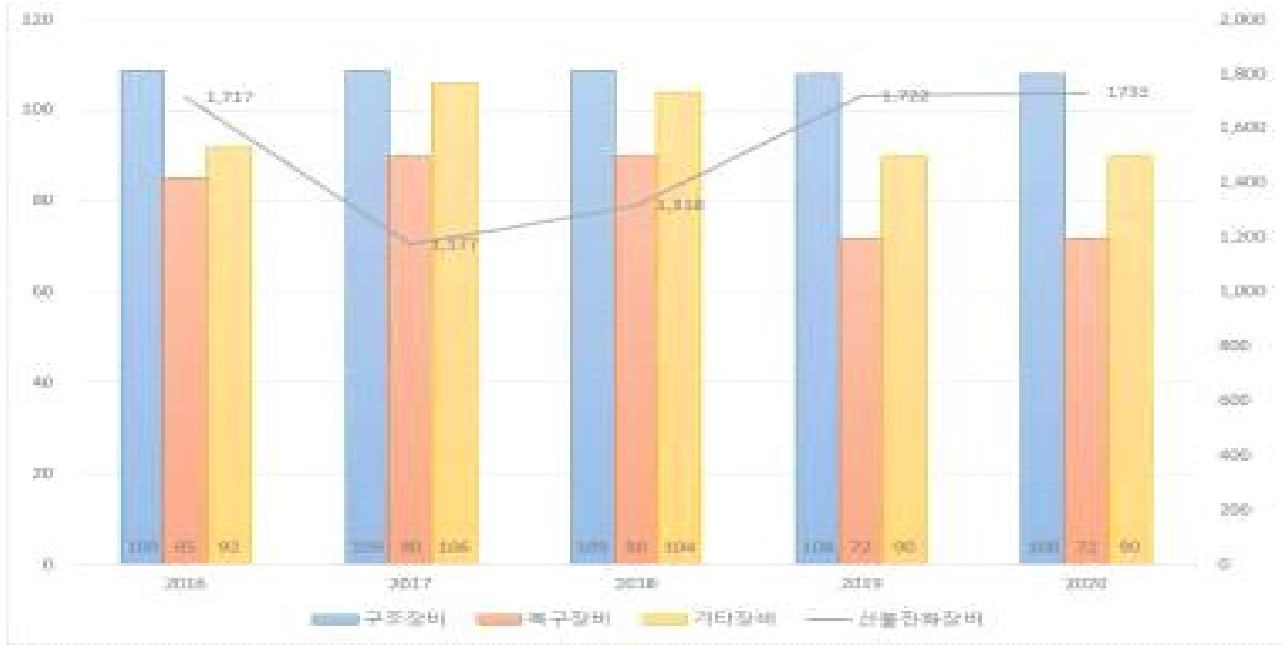
구분	계	산불진화차 (대)	랜턴 (개)	등짐펌프 (개)	간이수조 (개)	갈퀴리 (개)	기타 (톱, 낫)
총계	1,733	4	206	693	4	760	66

[기타장비]

구분	계	용접기	컴프레사	양수기	화학차	천공기	착암기	절단기	가스복구차량	기타
총계	90	0	0	43	0	0	0	0	1	46

◆ 연도별 비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구조장비	109	109	109	108	108
복구장비	85	90	90	72	72
산불진화장비	1,717	1,177	1,318	1,722	1733
기타장비	92	106	104	90	90
합계	2,003	1,482	1,621	1,992	2,003



- ☞ 산불진화장비 중 소모성 장비 정비 및 구매로 인한 소폭 증가
- ☞ 유사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 정비 추진중

다. 인력 지정

[기술인력]

구분	계	토목	건축	환경	전기	가스	통신	화공	기타
인원	105	6	6	1	3	4	0	1	84

[기능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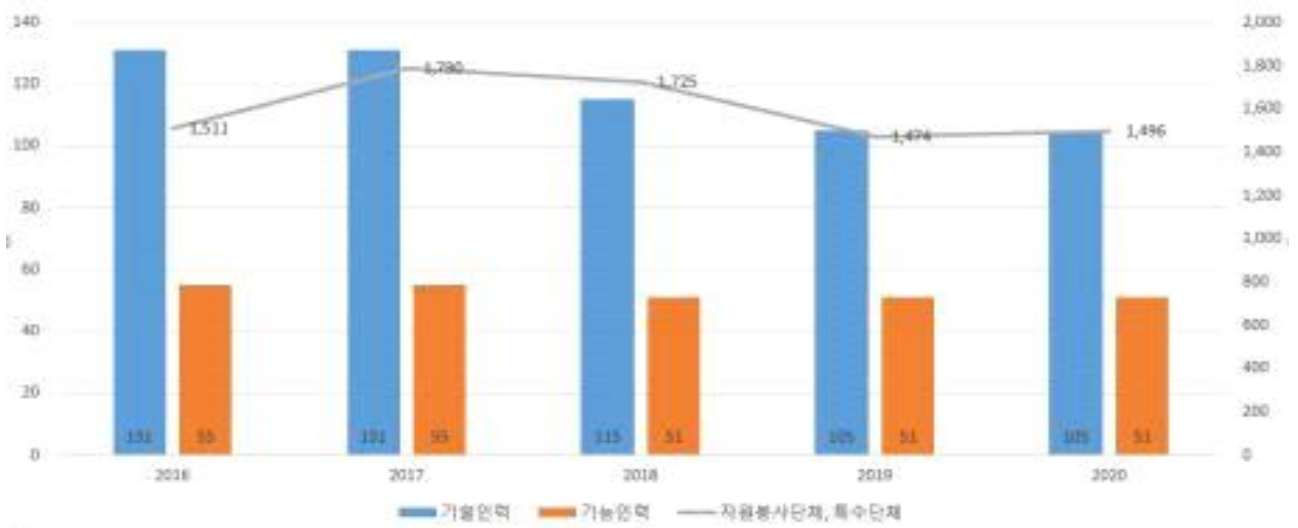
구분	계	전기공	기계공	통신공	착암공	절단공	용접공	철근공	중기운전	중기정비	기타
인원	51	4	10	0	0	0	4	0	8	0	25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구분	계	특수단체 및 개인					봉사단체 및 개인					
		의용소방대	공수특동지회	지역방재단	자율방범연합회	기타	적십자대	새마을부녀회	해병우회	모범운전자회	여성자원봉사회	기타
인원	1,496	246	100	223	13	0	231	422	40	28	193	-

◆ 연도별 비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기술인력	131	131	115	105	105
기능인력	55	55	51	51	51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1,511	1,790	1,725	1,474	1,496
합계	1,697	1,976	1,891	1,630	1,6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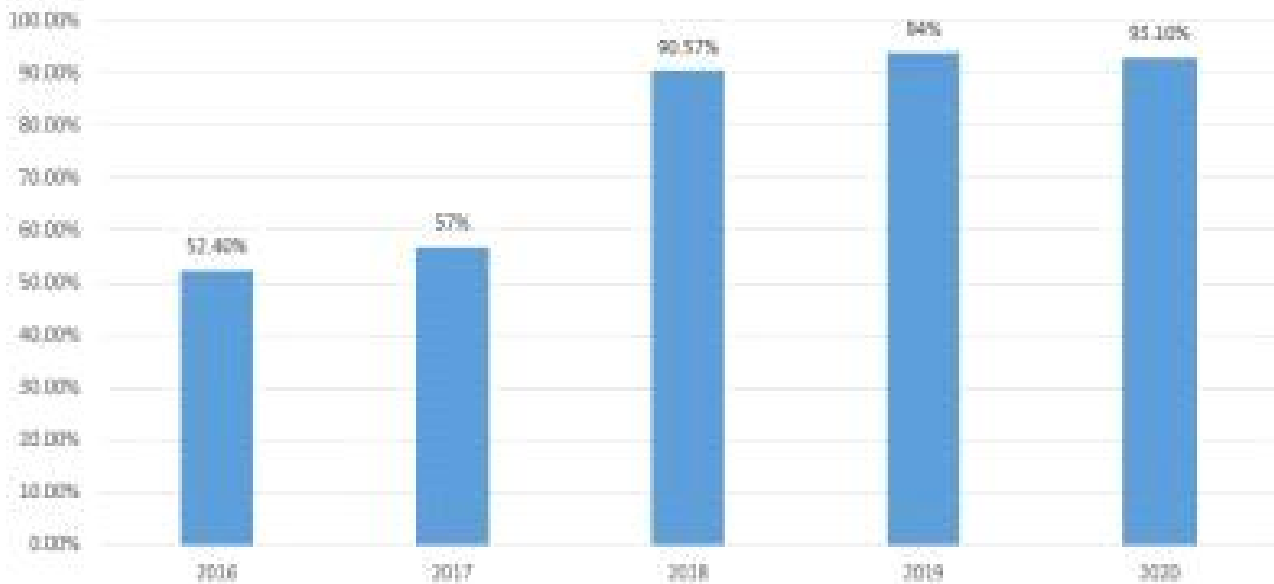
☞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인원 소폭 증가

⑧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가.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시설물별	내진설계 대상(①) (동수, 시설물 수)	내진설계 적용 +내진성능확보+ 내진 보강 실적(②) (전년도 까지)	2020년 내진보강 실적		내진율(%) (②+③)/①× 100
			동수(시설수) (③)	투자사업비 (백만원)	
공공시설물	42	39	0	0	92.8
도로시설물	63	58	0	0	92
어항시설	11	11	0	0	100
계	116	108	0	0	93.1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연도별 비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내진율	52.4%	57%	90.57%	94%	93.1%



☞ 2020년 관내 공공시설물 내진설계 대상 증가로 내진율 감소

나.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지정 및 관리

지구별	긴급대피장소 (개소)	표지판(개)			경보 시스템 (개소)	
		계	안내표지판	대피장소 표지판		대피로 표지판
신명지구	지경IC 신명동278-3 (야산) 울산교육수련원	24	2	3	19	1
산하지구	시코어호텔	13	2	1	10	1
정자지구	알로하호텔 벽산아진APT 강동초등학교 강동중학교	34	5	4	25	3
구유지구	정자오피스텔 구유동 산64 (야산) 구유동 82-3 (야산)	22	3	3	16	1
당사지구	우가마을경로당 강동축구장 주차장 추억의학교 어물마을 야산	27	5	4	18	2
합 계		120	17	15	88	8

◆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지정 및 관리 연도별 비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정비 사업비 집행실적(천원)		10,540	0	5,390	69,670	7,800
지구수(개소)		5	5	5	5	5
긴급대피장소(개소)		15	15	15	15	15
표 지 판	안내표지판	17	17	17	17	17
	긴급대피장소 표지판	15	15	15	15	15
	대피로 표지판	88	88	88	88	88
경보시설(개소)		6	8	8	8	8





☞ 2019년에 파손된 노후표지판 교체사업 및 지진안내표지판 규격 변경에 따른 교체비용 집행하였음

###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재난관리기금 적립 현황]

#### 가. 당해 연도 재난관리기금 확보 실적

당해 연도 확보 기준액(①)	확보액(②)	확보율 (②/①×100)
672백만원	672백만원	100%

#### 나. 누적 기준 재난관리기금 확보 실적

누적 확보 기준액(①)	누적 확보액(②)	확보율 (②/①×100)
5,124백만원	5,141백만원	100.3%

#### ◆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확보액	499	532	585	623	672
사용액	718	320	377	317	1,875
누적적립액	5,141				



#### ☞ 구체적 내용설명

- 코로나19 예방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 사용량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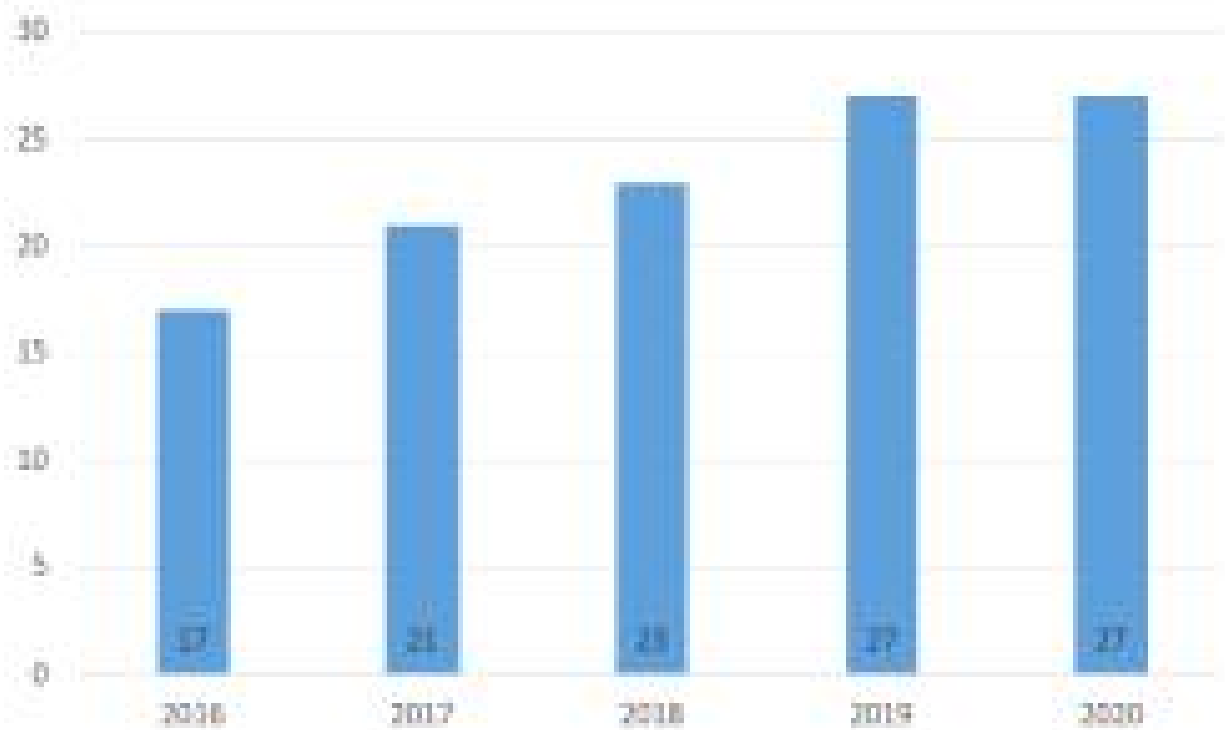
####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운용 현황

[울산 복구 행동매뉴얼 작성·운용 등 총괄 현황]

행동매뉴얼 명	소관과	개정년도	매뉴얼 주요내용
풍수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정보과	2020	재난대응절차, 부서별 협업기능, 기관임무
지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정보과	2020	
대형 화산폭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정보과	2020	
적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농수산과	2020	
가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정보과	2020	
조수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농수산과	2020	
산사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공원녹지과	2020	
산불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공원녹지과	2020	
유해화학 물질유출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환경위생과	2020	
대규모 수질오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환경위생과	2020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농수산과	2020	
해양선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농수산과	2020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정보과	2020	
다중밀집건축물붕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건축주택과	2020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농수산과	2020	
감염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보건소	2020	
원전안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정보과	2020	
전력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창조경제과	2020	
보건의료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보건소	2020	
육상화물 운송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교통행정과	2020	
항공기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교통행정과	2014	
낙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정보과	2020	
한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정보과	2020	
폭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안전정보과	2020	
다중밀집시설대형화재 행동매뉴얼	안전정보과	2020	
초미세먼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환경위생과	2020	
저수지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농수산과	2020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연도별 비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매뉴얼 수	17	21	23	27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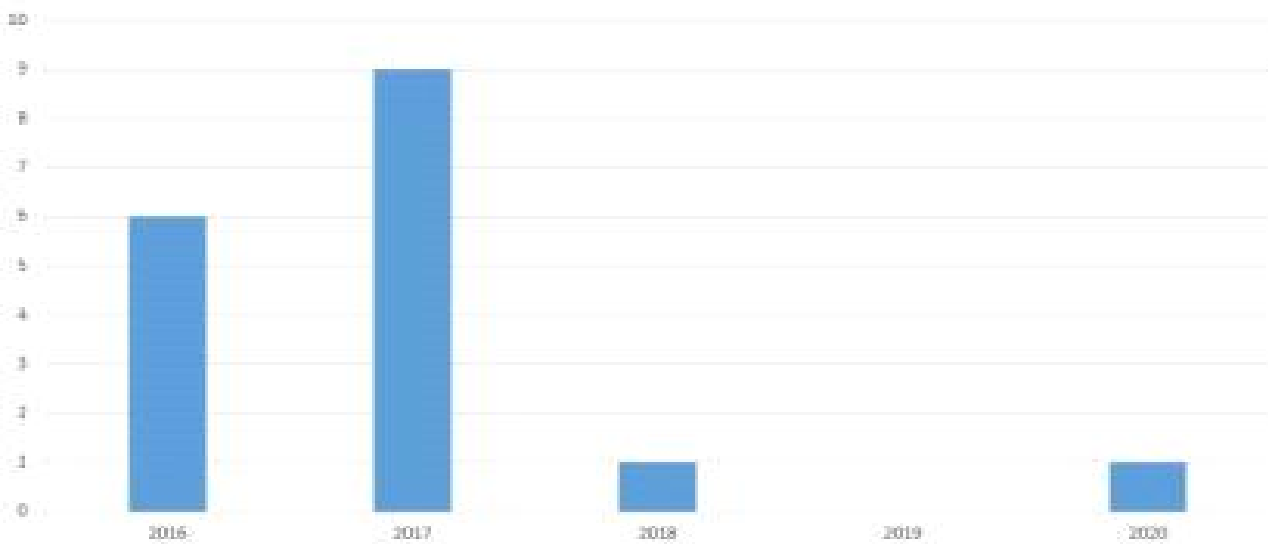
☞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현행 위기관리 매뉴얼의 현장작동을 위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매뉴얼 정비를 하고 있음

5)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진단분야별 점수]

구 분	위험환경	위험관리능력	방재성능	등 급(그룹)
진단결과	-	-	-	A

◆ 지역안전도 진단결과 연도별 비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등 급	6등급	9등급	1등급	해당없음	A등급



- ☞ 2019년 지역안전도는 개선작업 추진을 위하여 전국적 미 실시
- ☞ 2020년 지역안전도는 개선작업으로 평가등급이 1~10등급에서 A~E등급으로 변경(진단분야별 점수결과 없음)

## 6)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무더위 쉼터 지정현황]

명 칭	주 소	명 칭	주 소
원지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중원지2길 21	신전(강동)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신전길 10
매곡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로 138-19	신명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795-4
흥골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7길 101		
차일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차일2길 47	북정자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1길 60-1
제내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제내1길 32-1	대안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3길 42-6
시장2리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9길 12	당사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용바위1길 44-1
시장1리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5길 14-2	달곡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달곡1길 71
수성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7길 59	남정자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7길 3
수동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2길 43	금천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아름1길 24-1
매곡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본길 37-1	구암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780
동호계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0길 5	구남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구남1길 10-1
농소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3길 26	판지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판지2길 9-3
농소1동주민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2길 10	어물보건진료소	울산광역시 북구 아름1길 21
농소1동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5길 27	신명보건진료소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801
화정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화정3길 6	강동동주민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로 1096
이화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1길 1-5	명촌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7길 21
신천(냉천)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찬샘1길 19	상연암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상연암길 15-1
신기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로 125-4	상방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1길 37
약수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약수2길 39-3	상통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원연암1길 17-6
중산문화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643	두부곡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16길 5-1
국민체육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416-31	무룡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1길 25
기적의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5길 29-13	중앙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1길 9
농소2동주민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찬샘1길 24	명촌문화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2길 11
천곡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관문길 44-1	오토밸리체육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20
시례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창좌길 32	북구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00
성혜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성혜1길 12-5	효문동주민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70
상안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동산길 2	화봉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송내11길 9
동산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동산길 100-1	화동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화동15길 18-2
가대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농서로 672	송정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지당3길 25
달천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마을안길 3	곡리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저수지길 72
농소3동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아진1로 47	사청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송내1길 15
농소3동주민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신담로 77	송정동주민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송내14길 41
천곡문화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남로 121	양정동주민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오치골3길 16-1
황토전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황토전길 152	양정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1길 39
화암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화암길 34	신전(영포)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새장터5길 7-3
주렴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주렴1길 148	성내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성내2길 9-1
제전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구유길 46-5	중리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중리5길 3
장등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장등길 59	영포양정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영포로 685-1
우가경로당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114	영포동주민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영포로 707

## [지진 옥외 대피장소 현황]

장 소 명	도 로 명 주 소	면적 (㎡)
농소중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7길 13(호계동)	2462
호계초등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3길 20(호계동)	4342
온누리공원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산90	20223
매곡고등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매산로 45(매곡동)	5280
매곡중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1로 59(매곡동)	4408
매산초등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매산로 53(매곡동)	6281
신천초등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349-7(신천동)	4330
중산어린이공원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569	5443
속심이보주차장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200-14	3160
메아리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갯안1길 8(중산동)	892
약수초등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약수8길 50(중산동)	11065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로 32-46(중산동)	5100
이화중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631(중산동)	4213
이화초등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화정4길 40(중산동)	4437
상안중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양지길 5(상안동)	3096
농서초등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513-8	4895
동천고등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고래로 54(천곡동)	7977
동천초등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고래로 26(천곡동)	6122
상안초등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남로 59(천곡동)	4495
천곡중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고래로 38(천곡동)	3430
천곡초등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길 138(천곡동)	1898
달천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농서로 301(달천동)	21334
농소초등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가재길 57(달천동)	3037
달천고등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가재길 63-23(달천동)	11642
달천중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가재길 51(달천동)	5900
구.강동중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로 1093(정자동)	4022
구.강동초등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로 1119-6(정자동)	4719
튠리아트박물관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861(당사동)	2890
강동중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산음12길 10(산하동)	2555
강동초등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화암4길 5(산하동)	1848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산음3길 16(산하동)	14689
명촌근린공원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24길 44(진장동)	20288
명촌둔치주차장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786-13	10507
명촌초등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895-1	3566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옥외)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 90(진장동)	21973
진장중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10길 24(진장동)	2950
효문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261-44	15798
북구청임시주차장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084-1	16441
무룡고등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사청1길 30(연암동)	7530
연암중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사청1길 12(연암동)	4706
연암초등학교효문분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770-4	4843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울동6길 7(효문동)	4700
효정고등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울동2길 41(효문동)	8547
양정생활체육공원	울산광역시 북구 오치골2길 25(양정동)	26013
현대자동차문화회관주차장 및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523-5	14716
울산양정초등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2길 11(양정동)	2947
효정중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363(양정동)	16665
누리어린이공원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457-3	6248
한솔근린공원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469-1	10258
화봉공원	울산광역시 북구 송내1길 15(화봉동)	11422
화동저수지주차장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47	1093
송정초등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로 75(화봉동)	2840
화봉고등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화동로 47(화봉동)	2714
화봉중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통샘1길 2(화봉동)	6745
화봉초등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화산로 42(화봉동)	1909
염포초등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667(염포동)	2023
농소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호수중앙로 14(창평동)	44135
호계중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1길 39(호계동)	8223
동대초등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로 36(신천동)	2620
매곡초등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1로 49(매곡동)	6935
상방공원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1길 25(연암동)	12025
북구청광장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22502
연암초등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두부곡4길 35(연암동)	3542
울산에너지고등학교 운동장	울산광역시 북구 화동2길 28(화봉동)	3600

☞ 대피소 및 주요 지점에 안내표지판을 배치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함

**♣ 공시 관련 문의사항 및 의견 제출은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정보과 (담당자 : 김현미, 전화 : 052)241-7834)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393호

## 울산광역시 복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5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예우 및 유족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시기를 분기별에서 월별 지급으로 변경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보훈명예수당 지급시기 변경(안 제6조)  
- 매분기말 25일 → 매월 말 다음 달 15일

#### 3. 근거법규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5조  
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5조  
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마. 「울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4.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별표) 대비표 : 붙임1, 붙임2

####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복지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기재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식 : 붙임 3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나. 의견 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1)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4층 복지지원과(연암동, 북구청)
- 2) 전화번호 : 052-241-7606
- 3) 팩스번호 : 052-241-7609

####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https://www.bukgu.ulsan.kr/>)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1]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 울산광역시 복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매분기말 25일”을 “매월 말 다음 달 15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분부터 적용한다.

[붙임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명예수당을 <u>매분기말 25일</u> 까지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p>	<p>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  -----  -----  ----- <u>매월 말 다음 달 15일</u> -----  -----  -----.</p>

